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4.
재정경제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1월 22일, 안도걸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6년 1월 2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2026.03.16.)

상정

제434회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2026.04.10.)

상정, 심사, 의결(원안)

제434회국회(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4.15.)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원안)

2. 제안설명의 요지

(안도걸의원)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국민참여형 국민

성장 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면서 동 특례에 따른 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 4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검토보고서 참조.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박수영)

원안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붙임]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 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제91조의22까지 및 제91조의25”를 “제91조의22까지, 제91조의25 및 제91조의28”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 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조(비과세) -----
1. ~ 3의3. (생 략)	-----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 제86조의4 · 제87조 · 제87조의2 · 제87조의5 · 제88조의2 · 제88조의4 · 제88조의5 · 제91조의14, 제91조의16부터 <u>제91조의22까지</u> 및 제91조의25에 따른 저축이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	-----.
4의2. ~ 12. (생 략)	1. ~ 3의3. (현행과 같음)
	4. -----

	-- <u>제91조의22까지, 제91조의25 및 제91조의28</u> -----

	4의2. ~ 12. (현행과 같음)